

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7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0. 5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나 신고의무 및 토지의 지목·면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폐지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및 멸실 되었을 때 등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현행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에 각각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세무부서 신고를 폐지하고,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때 등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도 세무부서 신고를 생략하도록 함(안 제32조 및 안 제79조)

3. 참고사항

○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

4.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제99-106호(99. 6. 23 - 7. 12)

5. 본문 : 불임참조

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및 제79조제7항을 “삭제”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)</p> <p><u>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축물을 신축, 증축, 개축한 때 2. 건출물이 멀실되었거나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.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.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. 건축물의 구조·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·면적을 증감한 때 6.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<p>제79조(신고의무) ①~⑥ “생략”</p> <p><u>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	<p>제32조 삭제</p> <p>제79조(신고의무) ①~⑥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삭제</p>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2.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</p> <p>3.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</p> <p>⑧ “생략”</p>	<p>⑧(현행과 같음)</p>